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8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8. 5. 13.
발 의 자 : 흥연아 의원 외 11인

제안이유

-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, 의견수렴을
필수 조건으로 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- 시장이 업무를 위탁할 때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.

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6호 중 “기타 시장이” 다음에 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 1. ~ 5. (생략) 6. 기타 시장이 <삽 입>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	제16조(사업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</u>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68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5. 22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함.

2. 주 요 골자

- 공단의 대상사업 중 “기타 시장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6조)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6조 제6호를 삭제한다.

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16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 <u>6. 기타 시장이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</u></p>	<p>제16조(사업) ----- ----- ---.</p> <p>1. ~ 5. (원안과 같음) <u>< 삭제></u></p>